

신구조문대비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01호, 2018.4.17., 일부개정]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② (생략)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① - - - - - - - - - - - - - - - - - <u>자가 도급받거나</u> - - - - - -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1. (생략) 1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u>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u> 기술기준 2. 「전파법」 제37조제1항, <u>제45조</u> , 제4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u><신 설></u>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 - - - - - - - <u>제68조제2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u> - - - - - 2. - - - - - <u>제45조, 제47조</u> - - - - - - - - -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32조의2, 제39조 및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5. 다른 법령에서 공사의 설계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 1. <u>지하층</u> 2. <u>축사</u> 3. <u>창고 및 차고</u>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
제9조(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① (생략) ② 감리원으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감리원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제9조(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졸업증명서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키되,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 - - - -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u>기술사</u>	1. - - - - -
2. ~ 5. (생략)	- - - - - <u>특급감리원(기술사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u>
②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2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u>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u>	③ - - - - -
<신설>	- - - - -
<신설>	- - - - -
2. (생략)	1. - - - - -
④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u>
	가. <u>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u>
	나. <u>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u>
	2. (현행과 같음)
	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 1. ~ 5. (현행과 같음) 6.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제2항제3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4월 10일, 개인의 경우에는 6월 1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 다. (생 략)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① - 5월 10일, 개인- - - - - - - - - - ② - - - - - - - - - - - - - - - 500만 원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 가.- - - - - - - - - - - - - - - 채무제표(채무상태표 - - - - - - - - - - - - 나. · 다. (현행과 같음)
제29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신 설>	제29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해외시장 관련 정보 등 정보통신공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② (생 략) 제31조(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승낙을 얻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하도급·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2. 하수급인(재하수급인)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별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2.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3.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②·③ (생 략)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구분에 따른 1.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경우 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2. 사용전검사의 경우 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공사 나. 감리를 실시한 공사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사용전검사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제36조(사용전검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완지시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이내에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생 략) ② 정보통신기술자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 2. (생략) <신설> ③ ~ ⑦ (생략)	----- . 1. · 2. (현행과 같음) 3. 졸업증명서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설>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에 관한 사무 ② 조합은 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4.17]